

아주대학교 2017학년도 특별전형 선발계획

※ 특별전형 지원자 유의사항

1. 서류제출 유의사항

-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, 사본제출이 가능한 것은 별도 명시함
- 제출하는 서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**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** 받은 것이어야 함.
-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조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
2. 특별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, 주민등록등본, 자기확인서(소정양식)

3. 특별전형 대상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의미함.

- 근로소득의 경우' 연간 세대 소득 총액 3,000만원 미만으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세대, 또는 '종합소득의 경우' 세대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10만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세대

* 사회적 배려 대상자: 경제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증빙서류(공통)

-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)
-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본인·부모·배우자)
- 최근 3년간 재산세(지방세·국세) 과세증명서(본인·부모·배우자)
-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(납부)내역(본인·부모·배우자)
- 건강보험증 사본(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전원의 보험증 사본)
-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본인·부모·배우자) 및 최근 3년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(본인·부모·배우자의 근로소득 없는 자의 경우)

선발유형	지원자격	제출서류
신체적 배려 대상자	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~ 6급에 해당하는 자(본인에 한함)	○ 장애인 증명서(본인)
경제적 배려 대상자	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구	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[시군(구)청 또는 읍면(동)사무소에서 발급] ○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-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[시군(구)청 또는 읍면(동)사무소에서 발급]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복지급여 수급자: 자활, 장애수당,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,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, 한부모가족지원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상위계층 확인서 [시군(구)청 또는 읍면(동)사무소에서 발급]
사회적 배려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(상이 등급 판정을 판은자)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증명서(등급기재, 담당자 연락처 기재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·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립유공자증명서(등급기재, 담당자 연락처 기재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사상자증명서 (등급기재, 담당자 연락처 기재) ○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○ 학력인정확인서 (담당자 연락처 기재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에서 출생한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혼인관계증명서 (부모) ○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에 따른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재급여지급증명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·면지역)소재 중·고교에서 6년 교육과정(입학~졸업) 이수자로서 경제적 취약한 계층 <특수목적고, 자립형사립고 출신 제외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학교, 고등학교 생활기록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(보건복지부로부터 인·허가 된 곳)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○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○ 아동복지시설 인·허가증 사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·18 민주유공자 확인원 	